

영등포구의회  
제18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3. 5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44호로 2015년 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에 따라 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정보공개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공개 활성화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각종 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을 「한부모가족」 까지 확대  
(안 제5조)
- 나. 연구목적,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 수수료는  
100분의 50까지 감면 (안 제5조)
- 다.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 금액 별표 개정('14.11.10)  
사항 조례 반영

## 4. 참고사항

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- 한부모가족지원법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수수료 면제대상과 경감대상을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(이하‘법’)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‘시행령’)에 따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보완·신설하고자 하는 것임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(모자가족, 부자가족)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,
  -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
- 금번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게 증명 수수료를 전액 면제함

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
- 교수·교사 또는 학생들의 교육자료나 연구목적 자료등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게 구민과의 정보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,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,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**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**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.>

## 2 한부모가족지원법

**제5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**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1.4.12., 2014.1.21.>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 <신설 2011.4.12., 2014.1.21.>

**제5조의2(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)**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 <개정 2011.4.12., 2014.1.21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1.4.12., 2014.1.21.>

1.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
2.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·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
3.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4.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

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 <개정 2014.1.21.>

[전문개정 2007.10.17.]

[제목개정 2014.1.21.]

###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17조(비용 부담)**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(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출력물·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)으로 구분하며,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4.11.19.>

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(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)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비영리의 학술·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
2. 교수·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

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

3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,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.

1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

2. 수입인지(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)

[전문개정 2014.5.28.]

##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**제7조(수수료의 금액)**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.

[전문개정 2014.5.28.]